

수원지방법원 2015. 11. 26 선고 2015가단223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17. 12. 26 선고 2015나43186(본소), 2017나52733(반소)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15. 11. 26 선고 2015가단2238 판결

전문

원고 A

피고 B

변론 종결 2015. 10. 15.

판결 선고 2015. 11. 26.

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427㎡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피고는 1998년경 D한테서 허락을 받고 화성시 C 대 27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의 사용료로 연 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을 신축하여 거주하였다.

나. 원고는 D가 사망하자 2007. 3. 22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, 피고는 2008. 11. 16.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료로 연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임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,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원고와 관계에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관계는 계속된다고 할 것이다.

그런데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2015.1. 27.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. 7.27.경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.

판사 정재욱

부동산의 표시 (건물)

경기도 화성시 지상 2층 건물
철근 콘크리트조 (지하: 창고 1층:1,2층 근면생활시설 2층:단독주택)
건축면적 145.22평방미터 높이 7.9m